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906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확대 및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나.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은 2019년 9월 21일까지이나,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추진과 변화하는 먹거리 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위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까지 연장하는 조문 신설(안 제35조)
-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 삭제(조례 제6667호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 (2019. 7. 4. ~ 7. 24.)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
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6667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부칙 제2
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u></p>
<p><u>제35조 (생 략)</u></p>	<p><u>제36조 (현행 제35조와 같음)</u></p>
<p>부 칙 〈 제6667호, 2017.9.21. 〉</p>	<p>부 칙 〈 제6667호, 2017.9.21. 〉</p>
<p><u>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u></p>	<p>〈삭 제〉</p>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으로 예상되는 최대 142명의 위촉직 위원 회의 수당이 연평균 3억원 미만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임 (산출근거 : 142명×150,000원×12회 = 255,600천원)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유효연(02-2133-4709)